

이사들, 주주보호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 주주 보호 경영을 위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마련 -

오늘(2. 25.) 법무부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의 구체적인 행위 지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을 반영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TF)의 논의결과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법규범은 아니나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이행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사가 직무를 수행한다면 건전한 경영 판단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충실의무 이행방안에는 첫째,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이사회 의사결정을 자문하는 방안, 둘째, 법무·재무·세무·환경 등 외부전문가가 거래의 정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방안, 셋째, 이해상충 사안에 대한 이사의 의사결정 배경과 기준 등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실히 제공하는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이사의 주주보호 노력 및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일반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첨 부】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개정 상법 주요내용 각 1부

담당 부서	법무부	책임자	과장	최성수 (02-2110-3167)
	상사법무과	담당자	검사	권영우 (02-2110-4458)

붙임 1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의 주요 내용

[총주주 이익 보호의무]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주 전체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도록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

[전체 주주 공평 대우 의무] 정당화될 수 있는 사유 없이 일부 주주 권익을 다른 주주에 비해 실질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될 의무



충실의무 이행 방안 (공정성 강화조치)

특별위원회 자문

-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이사회 의사결정을 자문하여 거래의 목적·조건·절차 등 정당성을 검증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 법무·재무·세무·환경·노무 등 외부전문가가 거래의 정당성을 사전 검토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 이사들은 이해상충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배경과 기준, 대안 검토 과정 등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실히 제공



사례별 구체화

-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충돌이 전형적으로 문제되는 ▲계열회사 간 합병, ▲폐쇄기업화 거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이행 방안을 구체화
- 법무부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

[계열회사 간 합병]

- 합병가액의 적정성 등 확보 위해 특별위원회 자문, 독립적 외부전문가 검토 활용
- 복수의 자문기관을 선임하고, 이사회 의견서에 합병 관련 고려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등

[폐쇄기업화 거래¹⁾]

- 지배주주의 공개매수에 대해 이사회 의견 표명을 위해 특별위원회 자문 등
- 이사는 공개매수 조건의 공정성 등 공개매수에 대한 의견을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표명

※ 가이드라인은 법규범이 아니므로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 가이드라인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음

1) ‘폐쇄기업화 거래’ : 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주식을 공개매수 등을 통해 취득하여 비상장 회사로 만드는 일체의 거래

붙임 2

「개정 상법」 주요 내용

□ 1차 상법 개정 내용('25. 7.)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신설	충실의무의 대상: 회사	충실의무의 대상: 회사 및 주주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 보호 및 전체 주주의 이익 공평 대우 의무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개최 불가	일반상장회사: 개최 가능 시행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 의무 개최
상장회사 독립이사 도입 및 선임비율 확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은 "사외이사"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은 "독립이사"
	일반 상장회사 이사회내 사외이사 비율: 1/4 이상	일반 상장회사 이사회내 독립이사 비율: 1/3 이상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합산 3%를 강화	최대주주의 경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해임시 합산 3%를 적용	최대주주의 경우 감사위원 선·해임시 합산 3%를 적용

□ 2차 상법 개정 내용('25. 9.)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집중투표제 의무화	회사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배제 가능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100분의 1 이상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출	분리선출 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2명으로 확대

□ 3차 상법 개정 내용('26. 2.)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신설>	(원칙) 자기주식 소각 의무 (예외) 임직원 보상 등의 예외사유 해당할 경우 주주총회 승인 후 보유처분